##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41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 김주영・박 정・정태호

백승아 • 안태준 • 문정복

이기헌 · 천하람 · 박상혁

박균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전해 받아 사용한 한자어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 사용하게 된 것이나 그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특징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202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치매'용어관련 대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인 바 있음.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한자문화권 내의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2004년),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2001년), 그리고 홍콩 은 뇌퇴화증(腦退化症, 2010년)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vascular nuerocognitive disorders)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2011년), 간질을 뇌전증으로(2014년) 병명을 개정해 질병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바 있음.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가 급증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91만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 속에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조기 진단과 치료는 더욱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되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여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명 "치매관리법"을 "뇌인지저하증관리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치매의"를 "뇌인지저하증의"로, "치매환자"를 "뇌인지저하증 환자"로, "치매퇴치"를 "뇌인지저하증퇴치"로, "치매로"를 "뇌인지저하 증으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치매"란"을 ""뇌인지저하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치매환자""를 ""뇌인지저하증환자""로, "치매로"를 각각 "뇌인지저하증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치매가"를 "뇌인지저하증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치매관리""를 "'뇌인지저하증관리""로, "치매의"를 "뇌인지저하증의"로, "치매환자에"를 "뇌인지저하증관리""로, "치매의"를 "뇌인지저하증의"로, "치매환자에"를 "뇌인지저하증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목 외의 부분 중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을 "'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수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중앙치매센터"를 "중앙뇌인지저하증센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광역치매센터"를 "광역뇌인지저하증센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치매안심병원"을 "뇌인지저하증안심병원"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치매안심센터"를 "뇌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치매안심센터"를 "뇌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치매관리사업"을 "뇌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치매관리사업"을 "뇌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치매관리사업"을 "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뇌인지저하증관리 전달체계""로, "치매관리에"를 "뇌인지저하증관리에"로,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을 "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수행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치매관리에"를 "되인지저하증관리에"로, ""치매관리사업""을 "'되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치매를"을 "되인지저하증을"로, "치매환자"를 "되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매환자"를 "되인지저하증환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치매와 치매예방"을 "되인지저하증과 되인지저하증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관리사업"을 "되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한다.

제4조 중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뇌인지저하증관리 및 뇌인지저하증환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치매극복"을 "뇌인지저하증극복"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치매관리"를 "뇌인지저하증관리"로, "치매를"을 "뇌인지저하증증"로, "치매극복"을 "뇌인지저하증극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치매극복"을 "뇌인지저하증극복"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뇌인지저하증관리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뇌인지저하증관리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국가뇌인지저하증관리위원회"로, "치매관리에"를 "뇌인지저하증관리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치매"를 "뇌인지저하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검진사업"을 "뇌인지저하증검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치매환자"를 "뇌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치매"를 각각 "뇌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치매관리"를 "뇌인지저하증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치매 환자가족"을 "뇌인지저하증환자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 및 뇌인지저하증관리 전달체계"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관리"를 각각 "뇌인지저하증관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국가뇌인지저하증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중 "치매관리"를 "뇌인지저하증관리"로,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소속으로 국가뇌인지저하증관리위원회"로한다.

제8조제3항 중 "치매"를 "뇌인지저하증"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국가치매관리"를 "국가뇌인지저하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치매관리사업"을 각각 "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치매연구사업"을 "되인지저하증연구사업"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치매연구사업)"을 "(되인지저하증연구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의"를 "되인지저하증의"로, "치매 연구·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되인지저하증 연구·개발 사업(이하 "되인지저하증연구사업"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연구사업"을 "뇌인지저하증연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환자"를 "뇌인지저하증환자"로 하며, 같 은 항 제2호 중 "치매"를 "뇌인지저하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 터 제6항까지 중 "치매연구사업"을 각각 "뇌인지저하증연구사업"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치매검진사업)"을 "(뇌인지저하증검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를"을 "뇌인지저하증을"로, "치매검진사업"을 "뇌인지저하증검진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치매검진사업"을 "뇌인지저하증검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치매"를 "뇌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검진"을 "뇌인지저하증"으로 하다.

제12조의 제목 중 "치매환자"를 "뇌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치매환자"를 "뇌인지저하증환자"로, "치매 치료"를 "뇌인지저하증 치료"으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환자"를 각각 "뇌인지저하증환자"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치매환자"를 각각 "뇌인지저하증환자"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중 "치매로의"를 "뇌인지저하증으로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치매등록통계사업)"을 "(뇌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치매의"를 "뇌인지저하증의"로,

"치매등록통계사업"을 "뇌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치매등록통계사업"을 "뇌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치매정보시스템"을 "뇌인지저하증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 관련"을 "뇌인지저하증 관련"으로, "치매안심센터"를 "뇌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치매정보시스템"을 "뇌인지저하증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치매"를 "뇌인지저하증"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치매실태조사"를 "뇌인지저하증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를 "뇌인지저하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치매환자"를 "뇌인지저하증환자"로, "치매에"를 "뇌인지저하증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치매환자"를 각각 "뇌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중 "치매정보시스템"을 "뇌인지저하증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제8호 중 "치매안심센터"를 "뇌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하며, 같은 항제9호 중 "치매와"를 "뇌인지저하증과"로 한다.

- 1. 뇌인지저하증검진사업
- 5. 뇌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

제16조의 제목 중 "중앙치매센터"를 "중앙뇌인지저하증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관리"를 "뇌인지저하증관리" 로, "중앙치매센터"를 "중앙뇌인지저하증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을 "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수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관리"를 "뇌인지저하증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치매연구사업"을 "뇌인지저하증연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치매관리사업"을 "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치매문리사업"을 "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치매등록통계사업"을 "뇌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치매정보시스템"을 "뇌인지저하증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치매안심센터"를 "뇌인지저하증당심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치매 인식개선"을 "뇌인지저하증인심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치매 관련"을 "뇌인지 저하증 인식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 중 "치매와"를 각각 "뇌인지저하증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중앙치매센터"를 각각 "중앙뇌인지저하증센터"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광역치매센터"를 "광역뇌인지저하증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관리"를 "뇌인지저하증관리"로, "광역치매센터"를 "광역뇌인지저하증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관리사업"을 "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를 "뇌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치매 안심센터"를 "뇌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치매"를 각각 "뇌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치매 환자"를 "뇌인지저하증환자"로, "치매의"를 "뇌인지저하증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10호 중 "치매"를 각각 "뇌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광역치매센터"를 각각 "광역뇌인지저하증 센터"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치매"를 "뇌인지저하증"으로 한다.

제16조의4의 제목 중 "치매안심병원"을 "뇌인지저하증안심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의"를 "뇌인지저하증의"로, "치매 관련"을 "뇌인지저하증 관련"으로, "치매안심병원"을 "뇌인지저하증안심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치매안심병원"을 "뇌인지저하증안심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뇌인지저하증안심병원이 뇌인지저하증전문병동"으로, "치매 관련"을 "뇌인지저하증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안심병원이 원"을 "뇌인지저하증안심병원"으로, "치매 관련"을 "뇌인지저하증안심병원"으로, "치매 관련"을 "뇌인지저하증안심병원"으로, "치매 관련"을 "뇌인지저하증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치매안심병원"을 "뇌인지저하증안심병원"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치매안심센터"를 "뇌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예방과 치매환자"를 "뇌인지저하증예방과 뇌인 지저하증환자"로, "치매안심센터"를 각각 "뇌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안심센터"를 "뇌인지저 하증안심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를 "뇌인지저하증"으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환자"를 "뇌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치매등록통계사업"을 "뇌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치매"를 "뇌인지저하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치매환자"를 각각 "뇌인지저하증환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4 중 "치매"를 "뇌인지저하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치매관리"를 "뇌인지저하증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치매안심센터의"를 "뇌인지저하증안심센터의"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를 "뇌인지저하증안심센터에 뇌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안심센터"를 "뇌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중 "치매상담전화센터"를 "뇌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예방, 치매환자"를 "뇌인지저하증예방, 뇌인지저하증환자"로, "치매상담전화센터"를 "뇌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상담전화센터"를 "뇌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를 "뇌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를 "뇌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치매환자"를 각각 "뇌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치매"를 "뇌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치매상담전화센터"를 "뇌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로, "치매 관련"을 "뇌인지저하증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상담전화센터"를 "뇌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관리사업"을 "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연구사업"을 "뇌인지저하증연구사업"으로, "치매검진사업"을 "뇌인지저하증검진사업"으로, "치매환

자의"를 "되인지저하증환자의"로, "치매등록통계사업"을 "되인지저하증 등록통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중앙치매센터, 광역치 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를 "중앙되인지저하증센터, 광역되인지저하증센터 및 되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치매상 담전화센터"를 "되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치매관리사업"을 각각 "되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한다.

제19조 중 "치매관리사업"을 "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치매관리사업"을 "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뇌인지저하증"이란 「뇌인지저하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뇌인지저하증을 말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치매"를 각각 "뇌인지저하증"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치매"를 "뇌인지저하증"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치매관리법"을 "뇌인지저하증관리법"으로, "치매안심센터"를 "뇌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치매환자"를 "뇌인지 저하증환자"로 한다.

③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뇌인지저하증관리법」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치매관리법」"을 "「뇌인지저하증관리법」"으로, "치매환자"를 "뇌인지저하증환자"로 한다.

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9조제2호 중 "치매"를 "뇌인지저하증"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중 "「치매관리법」"을 "「뇌인지저하증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치매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치매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치매관리법</u>	<u>뇌인지저하증관리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u>치매의</u> 예	제1조(목적) <u>뇌인지저하</u>
방, <u>치매환자</u> 에 대한 보호와 지	<u>증의</u> 뇌인지저하증환자
원 및 <u>치매퇴치</u> 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u> 저하증퇴치</u>
수립·시행함으로써 <u>치매로</u> 인	
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	
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b>.</b>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u>"치매"란</u> 퇴행성 뇌질환 또	<ol> <li>"뇌인지저하증"이란</li> </ol>
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	
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	
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	
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	
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
2. <u>"치매환자"</u> 란 <u>치매로</u> 인한	2. <u>"뇌인지저하증환자"뇌인</u>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	<u>지저하증으로</u>
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	

- 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하다.
-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 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 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 다.
-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등을 말한다.
- 5.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 터
  - 다. (생략)
  -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 원
  -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

	<u>뇌인지저하증으로</u>
	<u>.</u>
3.	
	<u>뇌인지저하증이</u>
	<u>.</u>

- 4. "뇌인지저하증관리"---뇌인 지저하증의-----뇌인지저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u>하증환자에</u>-------뇌인지저하증에-----.
  - 5. "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수행기 관"-----.
    - 가. -----중앙뇌인지저하 증센터
    - 나. -----광역뇌인지 저하증센터
    - 다. (현행과 같음)
    - 증안심병원
    - 마. ------뇌인지저하증안 심센터
    - 바. -----<u>뇌인지저하</u>

<u>업</u>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6. "치매관리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u>치매관</u> 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u>치</u> 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 할 수행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치매관리에</u> 관한 사업(이하 "<u>치매관리사업"</u>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u>치매를</u> 예방하고 <u>치매환</u> <u>가</u>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치</u> <u>매환자</u>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치</u> <u>매와 치매예방</u>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u> 증관리사업</u>
6. "뇌인지저하증관리 전달체
계"
<del></del>
<u>뇌인지저하증관리에</u>
<u>뇌인지저하증</u>
관리사업수행기관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관리에뇌인
지저하증관리사업"
<u>뇌인</u>
<u>지저하증을</u>
하증환자
②
<u>인지저하증환자</u>
③
인지저하증과 뇌인지저하증예방

-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 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u>치매관리사업</u>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치매</u> 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 제5조(<u>치매극복</u>의 날) ① <u>치매관</u> 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u>치</u> 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 년 9월 21일을 <u>치매극복</u>의 날 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치</u> <u>매극복</u>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2장 <u>치매관리종합계획</u>의 수립 •시행 등
- 제6조(<u>치매관리종합계획</u>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 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

	4
	<u>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u>
제	 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뇌인
	지저하증관리 및 뇌인지저하증
	환자
제	5조( <u>뇌인지저하증극복</u> 의 날) ①
	<u> 뇌인지저하증관리</u>
	<u>뇌인지저하증을</u>
	<u></u> 뇌인지저하증
	<u> 구복</u>
	② <u>吳</u>
	<u>인지저하증극복</u>
졔	  2장 뇌인지저하증관리종합계획
<b>∠</b> 1	의 수립·시행 등
제	6조( <u>뇌인지저하증관리종합계획</u>
	의 수립 등) ①
	국가뇌인지

- 의 심의를 거쳐 <u>치매관리에</u>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u>치매</u>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 2. <u>치매검진사업</u>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 3. <u>치매환자</u>의 치료·보호 및 관리
-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 5. <u>치매</u>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 6. <u>치매관리</u>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 7. <u>치매환자가족</u>에 대한 지원
- 8. <u>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u>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 9. 그 밖에 <u>치매관리</u>에 필요한 사항
- ③ (생략)

저하증관리위원회
<u>뇌인지저하증관리에</u>
②
<u> </u>
· 1. <u>뇌인지저하증</u>
2. <u>뇌인지저하증검진사업</u>
3. <u>뇌인지저하증환자</u>
4. <u>뇌인지저하증</u>
5. <u>뇌인지저하증</u>
6. <u>뇌인지저하증관리</u>
7. 뇌인지저하증환자가족
8. 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 및 뇌
인지저하증관리 전달체계
9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	,]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천	લે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	۲)
<u>매관리</u> 에 관한 시행계획(이경	<u></u>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⑤ ~ ⑦ (생 략)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 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u>치매관리에</u>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부장관 <u>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u>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u>치매</u>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생 략)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
     의 발전에 관한 사항
  - 2. 3. (생략)

	(4)
	<u>뇌</u>
	<u>인지저하증관리</u>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	7조(국가뇌인지저하증관리위원
,	회)
	<u>뇌인지저하증관리</u>
	소속으로 국가뇌인지
	저하증관리위원회
제	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u>뇌인지저하증</u>
	④ (현행과 같음)
제	9조(위원회의 기능)
	 1 고기니이기기리즈기기
	1. <u>국가뇌인지저하증관리</u>
	2.·3. (현행과 같음)

- 4. <u>치매관리사업</u>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 5. 그 밖에 <u>치매관리사업</u>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제10조(치매연구사업)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u>치매의</u> 예방과 진 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u>치매</u> 연구·개발 사업(이하 "치매연 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 ② <u>치매연구사업</u>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u>치매환자</u>의 관리에 관한 표 준지침의 연구
- 2. <u>치매</u>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 스에 관한 연구
- 3. (생략)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u>치매연구</u> 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 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u>치매연구</u>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

4. <u>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u>
<u>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u>
제3장 <u>뇌인지저하증연구사업</u> 등
제10조(뇌인지저하증연구사업) ①
<u>뇌인지저하증의</u>
<u>뇌인지</u>
저하증 연구·개발 사업(이하
"뇌인지저하증연구사업"이라 한 다)
<u>의</u> ② 뇌인지저하증연구사업
1. <u>뇌인지저하증환자</u>
0 1 0 -1 -1 -1 7
2. <u>뇌인지저하증</u>
3. (현행과 같음)
③
<u>하증연구사업</u>
④ <u></u> 뇌인지저
<u>하증연구사업</u>

- 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 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 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단체로 하여금 <u>치매연구사업</u>을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⑥ <u>치매연구사업</u>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u>치매를</u>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 사업(이하 "<u>치매검진사업</u>"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u>치매검진사업</u>의 범위, 대상 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u>치매</u>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

	<b>⑤</b>
	<u>뇌인지저하증</u>
	<u>연구사업</u> .
	⑥ <u>뇌인지저하증연구사업</u>
1	
제	11조(뇌인지저하증검진사업) ①
	뇌인지저하증을
	<u>사업</u> .
	② <u>뇌인지저하증검진사업</u>
	③ <u>뇌인지저하증</u>
	④뇌인지저하증검진

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u>치매환자</u>의 의료비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u>치매환자</u>의 경제적 부담능 력을 고려하여 <u>치매 치료</u>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생 략)

제12조의2(<u>치매환자</u>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u>치매환자</u>의 가족을 위한 상 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 급하여야 한다.

#### ② (생략)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치매</u>
<u>환자</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	12조( <u>뇌인지저하증환자</u> 의 의료
	비 지원사업) ①
	<u>뇌인지저하증환자</u>
	② (현행과 같음)
제	12조의2( <u>뇌인지저하증환자</u> 의
	가족지원 사업) ①
	뇌인지저하증환자
	· ② (현행과 같음)
제	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뇌인
	지저하증환자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 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

- 1. (생략)
- 2. <u>치매환자</u>의 권리를 적절하게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3. (생략)
- ② (생략)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치매</u> 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 ④・⑤ (생 략)
- 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u>치매로의</u>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_
	_
	_
<ul><li>3. (현행과 같음)</li><li>② (현행과 같음)</li></ul>	
③ <u>뇌인</u> <u>지저하증환자</u>	<u>]</u> -
	_
	} -
	- <u>}</u> -
	_

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u>치매등록</u> <u>통계사업</u>과 관련하여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 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 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u>치매정보시스템</u>의 구 제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치매 관련</u> 사업과 제17조에 따른 <u>치매안심센터</u>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뇌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u>
② <u>뇌인지저</u>
하증등록통계사업
ll13조의2( <u>뇌인지저하증정보시스</u>
<u>템</u> 의 구축·운영) ①
뇌인지저하증 관련

<u>치매정보시스템</u>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제14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u>치매</u>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② (생략)

제14조의2(<u>치매실태조사</u>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치매</u>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 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③ (생략)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u>치매환자</u>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

<u> 뇌인지저하증정보시스템</u>
<u>.</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역학조사) ①
<u></u> 뇌인지저하증
<u>.</u>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 <u>뇌인지저하증실태조사</u>
의 실시) ①
- <u>뇌인지저하증</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
<u>뇌인지저하증환자</u>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u>치매에</u>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치매검진사업
- 제12조에 따른 <u>치매환자</u>의 의료비 지원사업
- 3. 제12조의2에 따른 <u>치매환자</u>의 가족지원 사업
- 4. (생략)
- 5. 치매등록통계사업
- 6. 제13조의2에 따른 <u>치매정보</u>시스템의 구축・운영
- 7. (생략)
- 8. 제17조에 따른 <u>치매안심센터</u> 의 업무
- 9. 그 밖에 <u>치매와</u> 관련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 ④ (생 략)

<u> 저하증에</u>
<u>.</u>
1. 뇌인지저하증검진사업
2 <u>뇌인지저하증</u>
환자
3 <u>뇌인지저</u>
<u>하증환자</u>
4. (현행과 같음)
5. 뇌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
6 <u>뇌인지저</u>
하증정보시스템
7. (현행과 같음)
8 <u>뇌인지저하증</u>
<u> 안심센터</u>
9 <u>뇌인지저하증과</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	중앙치미	<u>  세선터</u> 의	설치)	1
보건부	복지부장	관은	치매관리	<u>]</u> 에
관한	다음 건	호의	업무를	수
행하기	에 하기	위하여	중앙치	미
<u>센터</u> 들	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b>구</b> .

-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
- 2.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 3. (생략)
- 4. 치매연구사업 지원
- 5. <u>치매관리사업</u> 관련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 6. (생략)
- 7. <u>치매등록통계사업</u> 지원
- 8. 제13조의2에 따른 <u>치매정보</u> <u>시스템</u>의 구축·운영의 지원
- 9. (생략)
- 10. 제17조에 따른 <u>치매안심센</u><u>터</u> 업무의 지원
- 11. <u>치매 인식개선</u> 교육 및 홍 보
- 12. <u>치매 관련</u> 정보의 수집·분 석 및 제공
- 13. <u>치매와</u> 관련된 국내외 협력14. 그 밖에 <u>치매와</u> 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세16조( <u>중앙뇌인지저하증센터</u> 의
설치) ① <u>뇌</u>
인지저하증관리
중앙뇌인지
<u> 저하증센터</u>
1. <u>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수행기</u>
<u>관</u>
2. <u>뇌인지저하증관리</u>
3. (현행과 같음)
4. <u>뇌인지저하증연구사업</u>
5. <u>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u>
6. (현행과 같음)
7. <u>뇌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u>
8 <u>뇌인지저</u>
하증정보시스템
9. (현행과 같음)
10 <u>뇌인지저하</u>
<u> 중안심센터</u>
11. <u>뇌인지저하증 인식개선</u>
 19 뇌이기기키즈 <b>과</b> 러
12. <u>뇌인지저하증 관련</u>
13. <u>뇌인지저하증과</u>
13. <u> </u>
<u> </u>

인정하는 업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 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 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u>중앙치매센터</u>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① 시·도지사는 <u>치매관리에</u>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부장관과 협의하여 <u>광역치매센</u> 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u>치매관리사업</u> 계획
- 2. <u>치매</u> 연구
- 3. 제17조에 따른 <u>치매안심센터</u>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 4. <u>치매</u>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 5. <u>치매</u>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u>D</u>	 지저하증센터
	· <u>중앙뇌인지저</u> 
제16조의2( <u>광역</u>	 되인지저하증센터 <u></u> 뇌인
	<u>광역뇌인지</u>
1. <u>뇌인지저하</u> 2. <u>뇌인지저하</u>	
<u>안심센터</u>	<u>뇌인지저하증</u> 
	<u>ス</u>

교육・훈련

- 6. <u>치매환자</u> 및 가족에 대한 <u>치</u> 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 7. <u>치매</u>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8. · 9. (생 략)
-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u>광역치매센터</u>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기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6. <u>뇌인지저하증환자</u>
<u>뇌인지저하증의</u>
7. <u>뇌인지저하증</u>
8.•9. (현행과 같음)
10
<u>뇌인지저하증</u>
②
광역되인지저하증센터
③ <u>광역뇌인지저</u>
<u>하증센터</u>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뇌인지저하증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 ⑧ (생 략)

- 제16조의4(<u>치매안심병원</u>의 지정) 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치매의</u> 진단과 치료·요양 등 <u>치매 관</u> 런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u>치매</u> 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u>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u> 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 신청하면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u>치매안심</u> 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 운영하거나 <u>치매 관련</u>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인력·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

· ② ~ ⑧ (현행과 같음)
세16조의4( <u>뇌인지저하증안심병원</u>
의 지정) ① <u>뇌인지</u>
<u> 저하증의</u>
저하증 관련
<u>뇌인지</u>
<u> 저하증안심병원</u>
② <u>뇌인지저하증안심병원</u>
<del></del> .
③
<u></u> 뇌인지저
하증안심병원이 뇌인지저하증전
<u> 문병동</u> <u>뇌</u>
인지저하증 관련

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u>치매안심병원으로</u>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u>치매</u>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 ⑤ <u>치매안심병원</u> 지정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u>치매안심센터</u>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u>치매예방과 치매환자</u> 및 그 가 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u>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u>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u>치매안심센터</u>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 2.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 5. <u>치매환자</u>를 위한 단기쉼터의운영
-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ul><li>④ 뇌인지저하증안심병원</li></ul>
<u>뇌인지</u>
<u> 저하증 관련</u>
· ⑤ <u>뇌인지저하증안심병원</u>
제17조( <u>뇌인지저하증안심센터</u> 의
설치) ①
<u>뇌인지저하증예방과 뇌인</u>
지저하증환자
<u>뇌인지저하증안심센터</u>
뇌인지저하증안심센터
② <u>뇌인지저하증안심센터</u>
1. <u>뇌인지저하증</u>
2. <u>뇌인지저하증환자</u>
3. <u>뇌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u>
4. <u>뇌인지저하증</u>
5. <u>뇌인지저하증환자</u>
6. <u>뇌인지저하증환자</u>

- 6의2. · 6의3. (생략) 6의4. <u>치매</u>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 이 <u>치매관리</u>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업무
- ③ <u>치매안심센터의</u> 장은 <u>치매</u> <u>안심센터에 치매환자</u>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 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 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 ④ <u>치매안심센터</u>의 시설·인력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2(<u>치매상담전화센터</u>의 저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치</u>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u>치</u>매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할 수있다.
  - ② <u>치매상담전화센터</u>는 다음

6의2.・6의3. (현행과 같음)
6의4. 뇌인지저하증
7
<u>뇌인지저하증관리</u>
③ <u>뇌인지저하증안심센터의</u>
<u> 뇌인지저하증안심센터에 뇌인지</u>
<u> 저하증환자</u>
④ <u>뇌인지저하증안심센터</u>
ll17조의2( <u>뇌인지저하증상담전화</u>
<u>센터</u> 의 설치) ① <u>뇌</u>
인지저하증예방, 뇌인지저하증
· 환자
<u> </u>
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
,
② 뇌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

각	호의	업무릌	수행한다.
-	エー	ㅂㅣㄹ	1 0 1 1.

- 1.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 2. <u>치매환자</u>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 3. <u>치매환자</u>와 그 가족의 지원 에 관한 정보제공
- 4. <u>치매환자</u>의 가족에 대한 심 리적 상담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치매</u> 관 런 정보의 제공 및 상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치매상담전화센터</u>의 설치 ·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 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u>치매 관련</u>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u>치매상담전화</u> 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기 지방자치단체는 <u>치매관리사업</u>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1. <u>뇌인지저하증</u> 2. <u>뇌인지저하증환자</u>
 3. <u>뇌인지저하증환자</u>
4. <u>뇌인지저하증환자</u>
5 <u></u> 뇌인지
<u> 저하증</u> ③
<u>뇌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u> 
<u>관련</u>
④ <u>뇌인지저하증</u> <u>상담전화센터</u>
<u></u> 되인지저하증관 리사업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제10조에 따른 <u>치매연구사</u> 업, 제11조에 따른 <u>치매검진</u> 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u>치매</u> 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 조에 따른 <u>치매등록통계사업</u>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
  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
  턴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
  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 2. <u>치매관리사업</u>에 대한 교육・ 홍보에 드는 비용
- 3. <u>치매관리사업</u>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 용
- 4. <u>치매관리사업</u>을 수행하는 법 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 업에 드는 비용
- ② (생략)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저

1 <u>뇌인지저하증</u>
연구사업
<u> 증검진사업뇌인</u>
지저하증환자의
<u></u> 뇌인지저하증
등록통계사업
1의2
<u>중앙뇌인지저하</u>
증센터, 광역뇌인지저하증센터
및 뇌인지저하증안심센터
1의3 <u>뇌인지</u>
저하증상담전화센터
2. <u>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u>
3. <u>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u>
4. <u>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u>
② (현행과 같음)
19조(비밀누설의 금지)

따라 <u>치매관리사업</u> 에 종사하거
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20조(위임과 위탁) ① (생 략)

제: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 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 · 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 부를 <u>치매관리사업</u>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 단체 등에 위탁 하여 시행할 수 있다.

<u>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u>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
<u>- 「                                   </u>